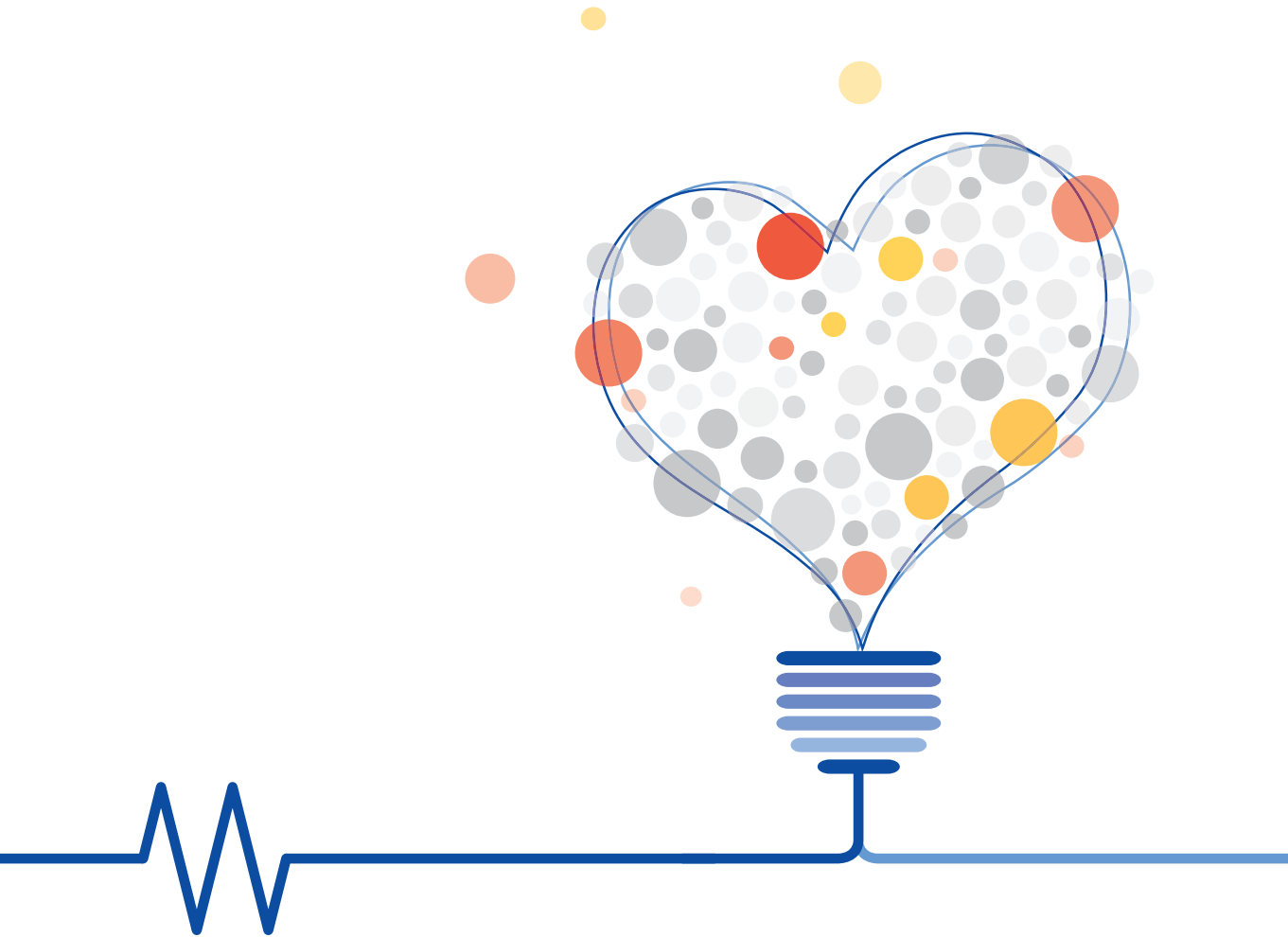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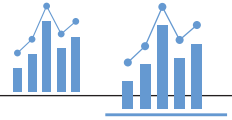
한국남동발전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계개선으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Guide Book





상생결제시스템

도입배경

-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납품대금 결제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화 및 하위기업, 중소기업으로 상생결제 확산을 통한 불공정 거래 관계개선으로 시장경제 질서 확립

중소기업 간 결제환경 악화

공정거래위원회 '15.01.13

- 하도급 대금 관련 주요 법 위반 유형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현금결제비 유지 위반), 하도급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 하였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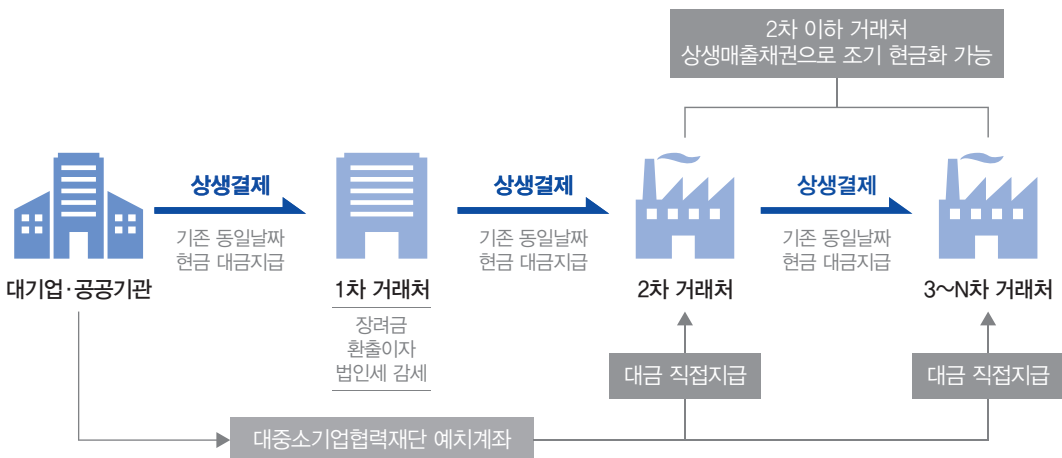
***외상매출채권** 본인이 1차 협력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은행'의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1차 협력기업은 이를 근거로 상환청구권 없는 선급금용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을 말합니다. B2B, B2B+, 외담대 등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5 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결과

- 원도급자의 현금결제비율 51.7%(제조 45.4%, 용역 75%, 건설 64.8%)로 열악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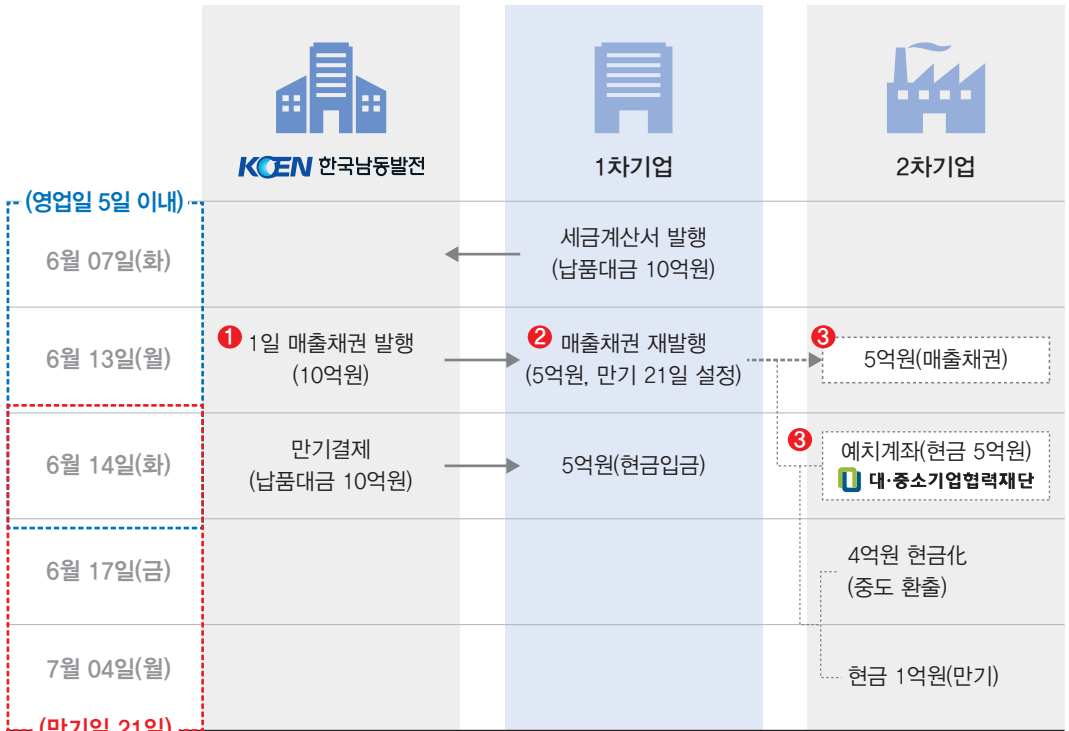
상생결제 프로세스

- 상생결제시스템은 기존 현금결제 방식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 대기업 신용도로 조기 현금화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결제시스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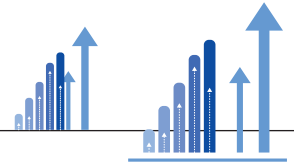
상생결제 적용사례



*상생결제발행시간과 은행영업시간(09:00~16:00)은 동일

1차기업 혜택	환출이자	$4\text{억원(중도환출)} \times 0.0243(\text{금리}) \times 17/365\text{일(일자)} = 452,712\text{원}$	
	장려금	$1\text{억원(만기)} \times 0.01(\text{예금이자}) \times 21/365\text{일(일자)} = 57,534\text{원}$	
	법인세감면 (중소기업)	$5\text{억원(매출채권재발행)} \times 0.1\%(\text{이율}) = 500,000\text{원}$ { 15일 이내인 경우 0.2%, 15~60일 경우 0.1% }	
2차기업 혜택 (4억원 현금화시)	(기준)수수료	$4\text{억원} \times 0.05 \times 17/365\text{일} = 931,506\text{원}$	금리 ('16년 7월 11일 고시기준) ▶ 한국남동발전 : 2.43% • KORIBOR 1.25% + 1.18% ▶ 대기업 : 3% ▶ 중소기업 : 5~10%
	(상생)수수료	$4\text{억원} \times 0.0243 \times 17/365\text{일} = 452,712\text{원}$ 금융비용 절감 ↓	
	법인세감면	2차 → 3차 매출채권 발행금액(발행시)	

*법인세감면 시행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추진경위

범부처 정책 도입현황

'14.11.17	•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 / 산업통상자원부
'15.01.03	•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 공정거래위원회 [2015 업무보고]
'15.04.30	•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 개선 / 국무총리실
'15.04.30	•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 고용노동부
'15.06.25	• 2015 하반기 경제정책 과제 / 기획재정부
'15.12.16	• 2016년 경제정책 방향 / 기획재정부
'16.03.10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 대책 / 고용노동부
'16.04.07	• 공공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16.09.07	•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및 업무협약(11개 공공기관) / 고용노동부

KOEN 한국남동발전 추진실적

'15.11	• 상생결제시스템 추진계획 수립
'15.12	• 상생결제시스템 농협과 업무협약
'16.07	• 상생결제시스템 전산시스템 구축
'16.10	• 상생결제시스템 결제(경상정비분야) 설명회
'17.09	• 상생결제시스템 전사확대설명회
'18.03	• 상생결제시스템 결제실적(남동 →1차 830억원, 1차 →2차 18억원) 1억원 이상 공사, 영역은 2018년 부터 시행 예정

자주하는 질문



1. 매출채권을 재발행하는 데 한도가 있나요?

- 한국남동발전이 발행한 금액 내에서 1차기업이 2차기업에 분할하여 매출채권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1회 최소한도 금액 100만원)

2. 상생결제상품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결제수단인가요?

- 아닙니다. 기존 사용하던 은행 외상매출채권에서 상품명만 새롭게 바뀌는 방식입니다. 외상매출채권 기능 모두 가지고 있고 협력기업간 발행 기능이 추가된 상품입니다.

04

상생결제시스템 특징점

대금지급의 안정성

- 납품대금을 원청사를 거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보관후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여 대금 지급의 안정성 보장
- 상환청구권이 없어 상위 기업이 부도가 나도 하위 협력사는 납품대금의 안정성 보장

현금유동성 확대

- 공공기관(발주기관) - 1차기업(원청사) 간 현금지급은 그대로 유지하되, 2~N차 기업은 만기일 전 현금 조달 시 공공기관(발주기관)의 신용도로 자금 조달 가능

간편한 구축

- 은행 상품과 ERP 간 연계 작업 이외에 별도의 시스템 구축 및 사용비 없음
상생결제 상품 협약 및 ERP 도입까지 약 1개월(최대 2~3개월) 소요


대금 지급 모니터링

- 현금과 달리 대금흐름 추적이 가능하며, 2차 이하 기업까지 상생결제를 통한 결제 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

모든 결제 활용가능

- 사업자 간 거래이면 모든 결제에 활용가능하며, 공사계약 건의 경우 하도급사의 자재, 장비임대, 노무비까지도 상생결제로 지급 가능

용어정리



- **구매기업** :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대기업을 의미합니다. 구매기업은 은행과 발행한도와 금리조건 등을 포함한 약정을 체결하여 여신한도 내에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 **매출채권(상생매출채권)** : 협력기업 중 상위기업이 하위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은행의 전산원장에 등록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하위기업이 이를 근거로 외상매출채권에 준하여 선급금용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제수단을 말합니다.
-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 : ‘은행’과 협력기업간의 할인거래와 관련하여 본인이 만기도래한 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협력기업에게 할인금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예치계좌** :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대금 결제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써 ‘상생매출채권’의 결제를 위한 입금과 출금, ‘협력기업’ 별 이자수익을 배분 입금을 위한 출금만 가능한 계좌를 말합니다.
- **환출이자** : 1차 협력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의 잔액을 가지고 2차 협력기업에게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고, 2차 협력기업이 이를 할인한 경우, 동일하게 2~3차 협력기업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경우에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이 할인 받은 대출을 만기일 이전에 중도상환 처리합니다. 이 때 남은 대출 기간에 대하여 환출되는 이자를 1~3차협력기업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환출이자라 합니다. 이것은 1~3차 협력기업이 자금을 보유 했다가 만기일에 상환하지 않고 사전에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는데 대한 유동성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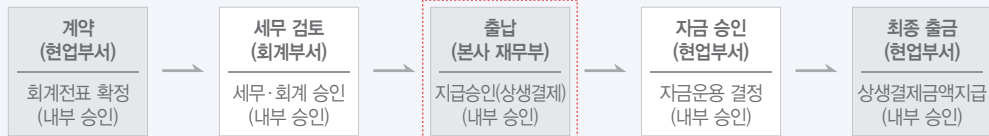


상생결제 이용 안내



- 대금 결제방식 개선, ERP(전사적 자원관리) 연계(현금 → 현금, 채권)
- 상생결제은행과 협약(매출채권 발행금액 한도 등 검토)
- 입찰공고문 사전 안내
 - 추정가격 1억이상 및 희망기업 상생결제 의무화

회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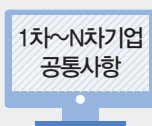
1차 기업

- 한국남동발전 협약 금융기관 중 선택하여 약정체결(온라인 가능)
 - 상생결제 전용계좌 개설
 - 상생결제 대출약정 [구매기업(한국남동발전) 지정]
 -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 매출채권 재발행 : 수취금액 범위내에서 채권 재발행(결제관행에 따라 만기일 설정)
 - *발행시점 : 상위기업(공공기관) 채권 발행 **만기 하루전 영업일 4일날**(최소금액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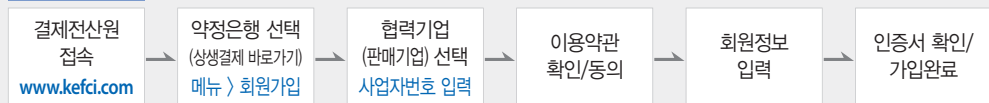


2~N차 기업

- 1차기업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금융기관)약정 체결(온라인 가능)
 - 상생결제 전용계좌 개설
 - 결제전산원 회원가입
 - 구매기업(한국남동발전) 지정 필요없음
- 매출채권 발행 : 수취금액 범위내에서 외상매출채권 발행(결제관행에 따라 만기일 설정)
 - *발행시점 : 1차사 약정한 **매출채권 발행일~만기 하루전까지** 하위기업에 매출채권 재발행 가능



회원가입 방법



매출채권 발행시점

	 남동발전(공공기관)	 1차 기업	 2~N차 기업
만기결제일	영업일 5일	기업별 결제 관행에 준하여 만기결제일 설정	기업별 결제 관행에 준하여 만기결제일 설정
매출채권 발행시점	만기결제일 하루 전 1일 외상매출채권 발행	남동발전(공공기관)에서 매출채권을 받은 당일에 만기결제일 설정하여 매출채권 재발행	상위기업이 매출채권을 재발행한 날로부터 만기결제일 하루전까지 하위기업은 매출채권을 재발행

대금결제일(만기일) 관련법

1. 영업일 5일 이내 대금지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47조의 2, 제 49조의 2)

발주자는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2. 매출채권 발행시 만기결제일 15일 이내 설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3조의 2/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의2)

계약상대자는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 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매출채권 발행시 만기결제일 60일 이내 설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건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KEEN 한국남동발전

| 상생결제시행, 협력기업홍보 |

본사 / 조달협력실(등반성장부)

강창원 부장 : 070-8898-1340
정중호 차장 : 070-8898-1341
본사 재무부 : 070-8898-1168

사업소 / 공무부서

삼천포발전본부 : 070-8898-2611
영흥발전본부 : 070-8898-3351
분당발전본부 : 070-8898-6210
영동예코발전본부 : 070-8898-4210
여수발전본부 : 070-8898-5250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상생결제 총괄기관 |

- 문의처 : 02-368-8450
- 상생결제시스템 대표번호 : 1670-0834
- 상생결제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winwinpay.or.kr>

상생결제 협약 은행 (18년 3월 기준)

| 협력기업과 약정 |

 우리는행	우리상생파트너론	1588-5000	woori.kefci.com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shinhan.kefci.com
 NH농협은행	HK다같이성장론	1588-2100	nh.kefci.com
 KB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66-9944	kb.kefci.com
 IBK기업은행	IBK상생결제론	1588-2588	ibk.kefci.com
 KEB하나은행	하나동반성장론	1599-1111	hana.kefci.com

KEFCI (주) 결제 전산원

| 상생결제 총괄기관 |

기업간 대금결제를 전자매출채권의 신용공여에 의한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기업간 대금 결제가 안전·투명·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선진화 도모하는 기관

02-703-8881 www.kefci.com